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첫째, 노동자 준수사항 구체적 명시(제2조의2)

노동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의 의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 이행이 원인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안전보건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수시유해요인조사 범위 명확화(제143조)

정부는 조사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사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작업 공정 또는 작업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업 현장은 “유사 공정”이 존재한다. 즉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작업장소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조사범위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유해요인조사에 포함된 증상설문조사 기준완화(제144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서 증상조사는 사업장내 어떤 부서, 어떤 공정이 근골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중요한 조사이며 또한 유해요인과 근골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 조사이다. 또한 증상조사는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는 의학적 조치의 시발이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자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복귀”라는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업주 조사 부담을 이유로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임으로 기본적인 조사마저 축소하겠다는 계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넷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제148조)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규정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관리능력이 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수의 10%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질환의 집단 발생의 가능성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 등을 담은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이 필요함을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규칙을 개악함으로써 기본적인 예방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다섯째, 컴퓨터 단발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제257조)

노동부는 개정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높낮이 조절기능이 갖춰진 책상을 구입하기 어려운”것을 들었지만, 이것은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그 동안 노동부가 사업주 의무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높낮이 조절 책상 설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부담을 규제완화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을 보호 할 책무를 가진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일 뿐이다.

여섯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유기화합물 1종추가(별표7)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해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메틸시클로헥산’을 새롭게 관리대상 유기화합물로 추가하였으나 이 규정은 수많은 개악을 은폐하기 위한 끼워 넣기 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사용 취급되고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중 노동자에게 암을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조차도 마련치 않고 있다.

또한 매년 수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4만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취급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보건상의 조치 등 사용자 의무가 부과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168종에 불과 한 것이 현재의 조건이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유해물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끼워 넣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조사결과

(위 조사결과는 2006년 9월 민주노총과 원진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서 인용함)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유해요인조사, 의학적조치, 유해성주지 등)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될 때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총 110개 사업장 중 부담작업에 해당되는 99개 사업장에 대한 법적인 사업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각각 86.9%)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 준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학적 조치(68.7%) 및 증상조사(76.8%) 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사업주 의무사항 불이행 현황 및 법규 위반 사업장의 행정 처분 결과

사업주 의무사항	이행여부(%)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장 수 (%)
	이행	불이행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사업장	99 (100.0)		13(13.1)
유해요인 조사	86 (86.9)	13(13.1)	0(0.0)
증상조사	76 (76.8)	23(23.2)	3(13.0)
의학적 조치	68 (68.7)	31(31.3)	4(12.9)

유해성주지(교육)	82 (82.8)	17(17.2)	0(0.0)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86 (86.9)	13(13.1)	3(23.0)
중량물 표시 의무	77 (77.8)	22(22.2)	3(13.6)

반면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13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나마 증상조사 및 의학적조치, 중량물표시,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12.9-23.0% 정도였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노동부령 제 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제25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근로자 준수사항)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5조제1항, 제25조, 제28조제2호,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 제96조, 제121조제1항, 제137조, 제157조, 제161

조, 제162조제1항제1호, 제19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98조제1항 및 제2항, 제218조제1항, 제220조, 제238조의2, 제254조제1항, 제255조, 제25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40조, 제194조, 제207조, 제238조의4, 제2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흡연을 금지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지시받은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3조제2항중 “지체 없이”를 “그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로 한다.

제144조 중 “증상설문조사”를 “증상설문조사(제1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함)”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동표 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49명 이하 사업장 : 연간 5명 이상

나. 50명 이상 99명 이하 사업장 : 연간 질병 발생자 수가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100명 이상 199명 이하 사업장 : 연간 10명 이상

라. 20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 : 연간 질병 발생자 수가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

마. 300명 이상 499명 이하 사업장 : 연간 15명 이상

바. 500명 이상 사업장 : 연간 3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연간 질병 발생자 수가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

제167조제1항 중 “유해물질의 양”을 “유해물질의 양(그램)”으로 한다.

제257조제3호 중 “책상 및 의자”를 “책상 또는 의자”로 하고, 동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높낮이 조절만으로 작업자 체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자 체형에 알맞도록 할 것

별표7제1호 중 “유기화합물(제113종)”을 “유기화합물(제114종)”으로 하고, 동호 노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메틸시클로헥산

도. 가목 내지 노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